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1)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대상 :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나. 평가 내용

- 1) 금천일자리주식회사(2021년도 실적) 기관 경영평가
- 2) 금천일자리주식회사(2021년도 실적) 대표이사 성과평가
 - 대표이사(임병호) : 2021. 01. 01. ~ 2021. 12. 31.

다. 평가 방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수의계약)

- 1) 용역기간 : 2022. 3. 8. ~ 7. 7.(4개월)
- 2) 소요예산 : 12,770천원(구비)

3. 그간 추진 일정

2022. 2월 ~ 3월	2022. 4월	2022. 5월	2022. 6월
①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용역 계약	② 평가지표 확정 ③ 경영평가 설명회 ④ 경영실적 및 이행 실적 보고서 제출	⑤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실시 (경영평가단 운영) ⑥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⑦ 평가보고서 및 종합분석 작성 (이의신청 검토) ⑧ 출자·출연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 확정 ⑨ 결과통보 및 활용

4. 평가결과

가. 경영평가(기관평가) 결과 : A등급

○ 평가 점수 : 84.6점

분 야	영 역	지표내용	배점	득점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경영시스템	- 전략경영 - 재무관리의 적정성	25	20.5
경영성과	사업관리, 수익성 및 생산성 등	- 당기순이익 등 목표달성도 - 고객만족도 조사	45	41.1
사회적가치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등	30	23
총 계			100	84.6

○ 평가등급 : A등급

등 급	S	A	B	C	F
평 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나. 성과평가(평가) 결과 : A등급

○ 평가점수 : 85.3점

평가구분	영역	지표내용	배점	득점
자체지표 (40점)	책임경영	- 리더십, 윤리경영	10	8.5
	고객만족도 증진	- 고객만족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10	8
	경영수지 개선	- 영업매출 및 예산절감 목표달성	10	10
	사업관리	- 주요사업 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10	8
경영평가 점수 환산 (60점)	기관경영평가 점수 환산		60	50.8
총 계			100	85.3

○ 평가등급 : A등급

등급	S	A	B	C	F
평 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5점 이상	85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다. 평가결과 활용

○ 경영평가 결과 : A등급

- 평가결과 활용 : 직원 성과급 총액 결정(150~200%) ※ 7월 중 통보

○ 성과평가 결과 : A등급

- 평가결과 활용 : 대표이사 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 대표이사 연봉 : 5% 인상 ※ 현재 기본연봉 : 50,000천원

· 대표이사 성과급 : 기본급의 160% 지급

5. 참고사항

가.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지표(요약표) - [붙임1]

나.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요약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1]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기관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I. 지속가능 경영 (25점)	리더십 (12점)	1.	경영층의 리더십	(6)	정성		
		2.	전략경영	(6)	(혼합)		
			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 적정성	4	정성	
			②	외부 지적사항 이행	2	정량	
	경영시스템 (13점)	1.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6)	정성	
			(감점) 채용비리 방지		△1.5	정량	
		(감점)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		△1.0	정량		
2.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7)	정성			
II. 경영성과 (45점)	주요사업 (12점)	1. 기관 고유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12)	정성		
	수익성 (8점)	1. 사업수익목표 달성도		(8)	정량		
	생산성 (15점)	1. 고용창출 성과목표 달성도		(10)	정량		
		2. 1인당 당기순이익		(5)	정량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III. 사회적 가치 (30점)	일자리 확대 (10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10)	(혼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10	정성	
			②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감점) ③	근로기준법 준수	△1	정량	
	(가점) ④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 실적	+1	정량			
	사회적 책임 (20점)	1.,	소통 및 참여		(5)	(혼합)	
				①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4	정성
				②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			
				③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			
		④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		1	정량		
		2.	윤리경영		(2)	정성	
		3.	인권경영		(2)	정성	
		4.	재난·안전관리		(4)	정성	
5.	안전사고 건수		(1)	정량			
6.	지역상생발전		(6)	정성			
총 계				100			

[붙임2]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

단위목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책임경영 구현(10점)	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이사의 리더십	5	정성
	② 윤리경영 확립 및 투명성 제고	5	정성
2. 고객만족 증진(10점)	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정량
	②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이사의 노력	3	정성
	③ 민원발생 최소화	3	정량
3. 경영수지 개선(10점)	① 영업매출 목표 달성도	5	정량
	② 예산절감 목표 달성도	5	정량
4. 사업관리(10점)	① 주요 사업 관리의 적절성	5	정성
	②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정성
5. 경영평가 결과(60점)	① 기관 경영평가 결과(점수환산)	60	정량
총 계		100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6조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6조(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